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유정희 의원 외 9명
- 나. 의안번호: 제1413호
- 다. 발의일자: 2020. 4. 3.
- 라. 회부일자: 2020. 4. 8.

2. 제 안 사 유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에 맞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또한, 2020년 4월 3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 및 근거조항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2 신설)
- 나.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다.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라. 조기폐차한 건설기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9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폐지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

- 노후 건설기계는 연간 1만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평균적으로 경유차보다 9.5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중 하나이므로¹⁾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3일부터는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업공사(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한함)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1) [도로용 3종 및 지게차, 굴삭기 대상]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이드(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2019)

- 「수도권특별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제정 및 시행되어 왔으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법」을 2019년 4월에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동법은 대기관리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제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수도권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수도권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관리지역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전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대상물질	대상물질 7종(총량관리 3종)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수립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시도지사 위임	시도 위임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일정 시설규모 발생량 이상	전체 총량관리 사업장
사업장 특례	· 전체 총량사업장에 배출허용기준 완화 · 기본·초과 배출부담금 면제	·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배출 허용기준완화

2)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과 「대기관리권역법」의 제정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 법령명과 근거조항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